

# MDG+5 정상회의(2005) 결의문

## 2005 세계 정상회의 결과(WORLD SUMMIT OUTCOME)

고위급 본회의, 2005. 9. 14~16

세계 정상들이 뉴욕 유엔 본부에 모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지구적 과제(global challenges)들에 대한 행동을 취할 것을 합의함.

### 1. 개발

- 2015년까지 천년개발계획(MDGs)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여국(donor countries)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ies) 모든 정부들의 강력하고 확실한 참여.
- 빈곤 퇴치를 위해 2010년까지 연간 500억불씩 추가 지원.
- 2006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국가계획' 들을 채택하기 위한 모든 개도국들의 참여.
- 말라리아 방지, 교육과 보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빠른 효과 구상'(quick impact initiatives)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 개발 프로젝트들(특히, 보건 부문)의 자금 조달을 위해, 국제재정기금(IFF)과 다른 구상들(initiatives)을 실행하려는 여러 국가들의 노력을 포함하여,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한 혁신적인 자원(innovative sources)에 출자.
- 외채과다 채무빈국들(HIPCs)의 다자간 및 양자간 공적채무의 100% 면제와 무상원조를 통한 재정확보로 장기적인 '채무 지속발전성'(debt sustainability)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더 고안할 것. 외채과다 채무빈국에 대한 외채경감방안(HIPC initiative)의 일부분은 아니지만, 적절한 곳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가진 국가 중, 저소득 개도국들을 위한 상당한 부채탕감(debt relief) 또는 구조조정을 고려.
- 무역 자유화와 '도하 작업계획'(Doha Work Programme) 중 개발 부분들의 이행을 위한 신속한 작업에 참여.

## 2. 테러리즘

- 누구에 의해서든, 어디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지 모든 형태와 표현에 있어서의 테러리즘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분명한 비난. (최초로, 모든 정부에 의한 규탄)
- 1년 내 '테러에 대항하는 포괄적인 협정'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추진. 핵 테러 협약(Nuclear Terrorism Convention)이 빨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 모든 국가들이 다른 12개의 반테러 협약뿐 아니라, 이 협정에도 가입하고 이행하도록 장려.
- 국제 사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테러 세력들을 더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동의.

## 3. 평화구축과 유지

- 상설 펀드(standing fund)와 지원 사무소(support office)를 바탕으로, 전쟁 이후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평화기로 이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평화구축 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를 설립하기로 결정.
-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새롭게 세워진 '경찰 역량'(police capacity).
- 알선과 중재를 위한 사무총장의 역량을 강화할 것.

## 4. 보호책임

- 집단 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국제 책임에 대하여 모든 정부가 무조건적이고 분명하게 수락. 평화적 수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명되거나 국내 당국이 평화적 수단의 사용에 있어서 분명하게 실패하고 있을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하여 위 목적을 위해 기꺼이 적절하고 결정적인 집단행동을 취할 것.

## 5. 인권, 민주주의와 법치

- 행동계획(action plan)을 지원하고, 고등판무관의 예산을 두 배로 늘리며, UN 인권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들.
- 내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협정.
- 보편적인 가치로서의 민주주의를 재확인하며, 13개 국가들로부터 받은 32만 불의 새로운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을 환영.
- 교육과 소유권에서의 불평등,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과 같은 만연한 성차별을 제거하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형사 면책을 없애는 데 참여.
- 부패방지 협약(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정상회의동안 취해진 비준 행위.

## 6. 관리 개혁 (Management Reform)

- 다른 기관들에까지 감시 기능을 확대시키고, 독립적인 ‘감시 고문위원회’ (Oversight Advisory Committee)를 발전시킬 것을 요청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윤리문제를 다루는 기능’ (Ethics Office)을 발전시키면서, 내부 감시 기능 (Internal Oversight Services)을 포함해서 유엔의 감시 역량을 폭넓게 강화.
- 새로운 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5년 이상 된 모든 임무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오래된 것들은 폐기함으로써 유엔을 최신화(update) 함.
- 예산, 재정과 인력자원에 대한 정책들과 규칙들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여, 유엔 기구가 오늘날의 과제 (today's challenges)들을 위해 적절한 직원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격치 못한 직원들의 정리해고(one-time staff buy-out)와 현재의 필요(current needs)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참여.

## 7. 환경

- 기후 변화에 의한 심각한 문제들의 인식과 ‘기후변화협약 (UN 기본 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통한 행동에 참여. 군소도서 개도국들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과 같이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게 원조 제공.
- 모든 자연 재해에 대한 전 세계적인 조기 경보

체계 (worldwide early warning system)를 만들기 위한 협정.

## 8. 국제 보건

- 예방(prevention), 간호(care), 치료(treatment), 지원(support)을 통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에 대한 대응규모를 확대. 그리고 국내, 양자간, 다자간 혹은 민간 자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자원들을 동원.
- 새로운 ‘국제 보건 법규’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들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감염성 질병과 싸우며, WHO, Global Outbreak Alert, Response Network 를 지원.

## 9. 인도주의 지원

- 재난 발생시 구호활동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중앙 긴급 순환 기금 (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 개선
- 국내 유민들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본 틀로서, ‘국내유민에 대한 기본 원칙들’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의 승인.

## 10. UN 헌장 개정

- 헌장을 개정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결정.

- UN의 역사상 중요한 '자치 허용 원칙'을 확인하며, 신탁 통치 위원회(Trusteeship Council)를 해산.
- 현장에서 "enemy states"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 삭제.
- ※ [www.un.org/summit2005](http://www.un.org/summit2005)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음.

## 2005년 9월 13일 초안 문서

### I. 가치와 원칙

1. 우리, 각국 정상들은, 2005년 9월 14일~16일 뉴욕의 UN 본부에서 모였음.
2. 유엔에서의 우리의 신념과,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정의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인 유엔 헌장 및 국제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재차 다짐하며, 그것들을 엄격히 준수하려는 우리의 결정을 다시 확인함.
3. 우리는 21세기를 시작하며 채택했던 '유엔 밀레니엄선언' (UN Millennium Declaration)을 재확인함. 지방, 국내, 지역 및 지구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동원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유엔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밀레니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 및 그 관련 분야의 주요 유엔 회의와 회담이 갖는 가치를 인정함.
4. 자유, 평화, 연대, 관용, 인권 존중, 자연 보호 및 우리의 공동 근본 가치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5. 우리는 헌장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쫓아 전 세계 모든 곳에 정의와 지속적인 평화를 세울 것을 결정함. 우리는 모든 국가의 주권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과 그들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며,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헌장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힘의 사용과 위협 또는 평화적 수단과 국제법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분쟁해결방식을 삼가할 것임. 또한,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의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기본권과 자유의 존중 및 인종, 성별, 언어,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의 평등권 존중, 경제, 사회, 문화 혹은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헌장에 명시된 의무들을 선의로 이행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정함.
6. 우리는 유엔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광범위하면서도 상호 연결된 과제들(challenges)에 더 적절하게 대처하고, 평화와 안보, 개발 및 인권의 영역에 있어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국제 법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다자간 체계' (multilateral

system)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또한, 유엔 결의와 결정의 이행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것.

7.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세계적(global)이며 상호의존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믿음. 어떠한 국가도 전적으로 혼자 설 수 없음. 초국적인 위협(transnational treats)에 맞서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의 성패는 국제법에 따른 효과적인 협력(effective cooperation)에 달려있음.
8. 현재의 개발수준과 상황에서의 주요 과제들과 위협들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이루어 내는 것이 긴급함. 결의(resolution)와 결정(determination)을 통해 그러한 과제와 위협들의 근본원인에 대처하며, 그 합의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참여함.
9.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은 유엔 체계의 기둥이며 집단안보와 안녕을 위한 기반. 개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인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것임.
10. 개발은 그 자체로 핵심 목적이며, 경제, 사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유엔 활동의 프레임워크 형성에 핵심요소임.
11. 우리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국

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법치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과 기아의 퇴치에 필수적임을 인정함.

12. 성 평등, 모든 인권, 자유의 보장과 축진이 개발, 평화, 안보를 진보시키는데 필수임을 재확인함. 우리는 어린이들의 필요를 최대한 고려하여, 미래 세대에게 꼭 맞는 세계(a world fit for future generation)를 만들기로 약속함.
13. 우리는 인권 제반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관계성을 재확인함.
14. 세계의 다양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문화(cultures)과 문명(civilizations)이 인류번영에 기여함을 인정.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다른 문화와 사람들 사이에 관용, 존중, 대화 및 협력을 장려하며, 어느 곳에서든 인류 복지, 자유와 진보를 촉진시킬 것을 약속함.
15. 우리는 유엔 체계(UN system)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신뢰성과 책임성을 신장시킬 것을 약속함.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담된 책임이자 중요한 관심사임.
16. 그러므로 우리는, 더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세계를 만들 것을 결의하며, 아래의 네



용협력과 기술협력의 증가, 국제통화, 국제 금융 및 국제 통상 시스템의 일관성 강화를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22. 각국은 그 스스로의 개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성취에 있어서 국내 정책과 개발 전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또한 국가차원의 노력은 개도국의 개발 기회를 확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보조적인 국제 프로그램들, 정책들과 조치들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함. 이는 국내 조건을 고려하고 국내 주권, 전략과 주인의식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함. 이 목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의함.
- MDGs를 포함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6년까지 포괄적인 국가 개발 전략(comprehensiv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을 채택하고 이행함.
  - 거시 경제의 안정화와 장기 성장을 달성, 유지하고 공공기금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공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개발 원조(development assistance)가 국가 능력배양 (building national capacity)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보장함.
  - 개발 원조 증가,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서 국제 무역 촉진, 상호 동의한 조건하의 기술 이전, 투자흐름의 증액과 더 폭넓은 부채 삭감을 통해, '국가 개발 정책과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

함. 충분한 양질의 원조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며, MDGs를 비롯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개도국들을 지원함.

- 국제 사회에서 각국 경제간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국제 경제 관계에 있어서 법치 기반 레짐의 출현은, 국가 경제정책이 - 특히, 무역, 투자, 산업 개발의 영역에 있어서 - 종종 국제적인 원칙, 의무와 국제 시장을 고려해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각국 정부는 국제 규범과 의무를 받아드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제약(국내 정책형성과정 중 있을 수 있는 제약) 사이에 존재하는 교환조건(tradeoff)을 고려해야 함. 특히, 개도국들은 개발목적과 목표를 유념하면서, 국내 정책 형성과 국제 원칙, 의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촉진 뿐 아니라, 국가적인 개발 노력에 있어서 NGO, 시민 사회, 민간부문 및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강화시킴.
- 유엔 기금들, 프로그램들, 특별기관들은 공동 국별 평가(Common Country Assessment)와 유엔 개발 원조 구성 과정(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Process)을 통하여 개도국 지원을 강화함.
- 개발과정에서 천연 자원을 보호함.

## 개발을 위한 금융

23. 우리는 몬테레이 협의를 재확약함. 개발을 위해 금융 자원들을 동원하는 것과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내 그러한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MDGs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의 성취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중추적임. 이러한 관점에서,
- 우리는, ODA의 실질적 증가를 위한 최근 약정에 의해 고무 됨. OECD 는 모든 개도국에 대한 ODA가 2010년까지 연간 500억불까지 증가될 것으로 평가하며, 그러한 원조의 실질적 증가는 MDGs를 포함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달 성을 위해 필수적임.
  - 2010년 내에 LDCs에 GNP의 0.15% ~ 0.20%를 지원하고자 하는 부르셀 행동 프로그램(Brussels Programme of Action) 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들이 ODA로 2010년까지 적어도 GNP의 0.5%, 2015년까지 GNP의 0.7%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일정표(timetables)를 환영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을 약속한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줄 것을 권고함.
  - 더 나아가,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을 포함해서 원조의 질과 그 효과를 높이려는 최근의 노력들을 환영함. 각국의 전략들을 고려한 원조의 일치, 제도적인 능력배양, 거래비

용 감소, 관료적 절차 제거를 포함하여 확실한 모니터링과 분명한 최종 기한 설정과 함께 원조효과성에 관하여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며, 언타이드 원조(untying aid)에 대한 진전을 만들고, 수혜국의 흡수역량(absorptive capacity)과 재정관리를 강화시키며, 개발결과들에 대한 집중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이며 시기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을 결의함.

- 발전되고 혁신적인 자원을 찾는 일이 개도국에게 심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님. 그러한 관점에서, 재정 마련을 위한 전통적인 자원들을 증가, 보강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추가적인 자원들을 규정할 목적을 가진 '기아와 빈곤에 대항한 행동 (Action against Hunger and Poverty)' 과 같은 국제적인 대화와 노력들, 공헌들에 주목함. 일부 국가들은 국제재정기금(International Finance Facility)을 시작할 것임. 어떤 국가들은 면역자금 마련을 위한 IFF를 시작해왔음. 어떤 국가들은 직접적인 재정모금 혹은 IFF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특히, 보건 분야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을 마련할 예정임. 다른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음.
- 민간 부문이 새로운 투자와 고용, 개발 재정모금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적격을 갖춘 다자간 및 국제 포럼들을 통해 저소득 개도국들이 무엇보다도 재정적, 전문적,

기술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개발 필요에 대처할 것을 결의함.

- 적격한 다자간 포럼 및 국제포럼들과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중간소득 개도국(middle-income developing countries)이 그들의 재정적, 전문적, 기술적인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위해, 그들의 개발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함.
- 유엔 총회에 의해 설립된 세계 연대 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운용하며, 총회 회원국들이 이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장려함.
- 특별히 소액금융과 소액대부를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국내 자원 동원

24. 성장과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우리의 공동목표의 추구에 있어서, - 생산적인 투자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인적 능력들을 증가시키며, 자본도피(capital flight)를 줄이면서 기금의 불법 거래를 억제하고, 합법적인 국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적 및 사적 국내 저축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도전과제임.
- 모든 단계에서 굿 거버넌스와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추구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려는 개도국의 모든 정책과 투자 노력을 지원함.

- 굿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건전한 경제 정책,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건전한 민주주의 체계와 발전된 사회기반시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퇴치 그리고 고용 창출을 위한 기본임. 자유, 평화와 안보, 국내 안정,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모든 인권의 존중, 법치, 양성 평등, 시장 경제 기반 정책과 정의와 민주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약속 역시 필수적이며 서로를 보강하는 것들임.
- 모든 단계에서 부정, 부패와의 싸움을 우선순위에 둘 것. 이런 관점에서 신뢰성, 투명한 공공 관리, 유엔 부패방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과 양립하여 부정부패를 통해 획득한 재산을 회수하는 노력을 포함한 공동책임과 신뢰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의 채택 등 모든 국내외 차원의 행동들을 환영함. 또한, 유엔 부패방지 협약에 사인, 비준, 이행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기를 권고함.
- 경제 개발과 기아, 빈곤의 퇴치를 가속화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파트너십과 혁신을 위한 적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적, 공/사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행동들을 통해 민간 역량과 자원들을 개도국내 민간부문을 촉진시키는데 사용.
- 자본도피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기금의 불법 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지원함.

## 투 자

25. 우리는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들(countrie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내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투자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비롯한 더 많은 직접 투자를 지원할 것을 결의함.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것들을 고려함.
- 소유권의 존중, 법치, 적절한 정책, 규제와 더불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들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함.
  - 보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주택문제와 교육, 공공재와 사회내 취약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s)에 지속가능하며 적절한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
  - 공적/사적 부문과 적절한 공여자(donor)가 있는 분야를 모두 참여시키는 전략으로 각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와 사회 간접자본을 형성하는 프로젝트를 개발시킬 것.
  - 위험 평가 메커니즘(risk rating mechanisms)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제 금융기관 혹은 은행기관을 유치함. 사적 부문에서 만들어진 국가 위험 평가(sovereign risk assessment)는 최대한 양질의 자료와 분석에 의한 엄격하고 투명한 척도를 사용해야 함.
  -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으로 충분하고 안정적

인 민간 금융 자본의 이동(private financial flows)이 필요함을 강조. 특히, 아프리카, LDCs,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내륙 개도국(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들로의 금융 자본 흐름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중요. 단기 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법들은 중요하며 고려되어야 함.

## 채 무

26. 채무를 통한 자금마련과 부채 탕감이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래로, 개도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이며 포괄적으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대단히 중요함.
- 최근 HIPC 국가들이 IMF, IDAADF(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and African Development Fund)에 진 많은 채무를 100% 탕감해 주고, 국제 금융기관의 자금 역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G8의 제안을 환영함.
  - 채무의 지속발전성(debt sustainability)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임을 강조. 부채 탕감,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증가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MDGs를 비롯한 국가 개발 목

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채무의 지속발전성'의 중요성을 강조.

- 더 나아가, 증여 중심의 자금마련 (grant-based financing)과, HIPC의 양자간/다자간 채무의 100% 탕감을 통해 장기적인 '채무의 지속발전성'을 강화시킬 목적을 가진 추가적인 방법들과 이니셔티브들이 고안될 필요성 강조. 상황에 따라 적절하며 상당한 채무 탕감 및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진 중,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구조개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나라들의 부채 문제를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성 강조. 그러한 메커니즘은 적절한 경우에, '지속가능한 개발 스왑' (sustainable development swaps) 또는 '다자채권자부채 스왑 조정' (multicreditor debt swap arrangement)을 위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음. 이러한 방법들에, 저소득 국가들의 '채무의 지속발전성'을 위한 기본 틀을 개발시키기 위한 IMF와 World Bank의 더 심도 깊은 노력들이 더해져야 함. 이것은 다자간 금융기관들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ODA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무 역

- 27. 의미 있는 무역 자유화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원칙 중심적이며 개방되고 무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간 무역 체계는 개발의 전 단계

다 각국에 이익을 주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무역이 경제성장, 고용촉진, 모든 이들을 위한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역할을 재확인함.

- 28. 우리는 특히, LDCs와 같은 개도국들이 그들의 경제 개발의 필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무역 체계(world trading system)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개도국들의 수출을 위해 한층 강화되고 예측 가능한 시장접근성을 보장.
- 29. 우리는 부르셀 행동 프로그램(Brussels Programme of Action)을 따라, 개도국 시장 뿐 아니라 선진국 시장에 모든 LDCs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와 무할당 시장접근(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그들이 공급자측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30. 우리는 이미 제공된 상당한 지원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생산능력과 무역 능력 구축을 위해 늘어난 원조를 유지하며 촉진시키고, 이러한 맥락에서 더욱 진전된 단계를 취할 것을 약속함.

- 31. 우리는 규칙기반의(rules-based) ‘지구적 무역 체계’의 전 세계적 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기준을 따라 개도국과 과도기 경제국(economies in transition)들의 WTO 가입을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기 위해 일할 것임.
- 32. 우리는 ‘도하 작업프로그램’(Doha work programme)의 개발 부문이 실행되도록 신속하게 일할 것임.

## 물 품

- 33. 취약하고 변동스러운 생필품의 가격 효과에 대처하고, 상품 부문 경쟁력을 재구성하고 다양화시키며 강화시키려는 생필품 의존 국가들의 노력을 지원할 필요성 강조.

### 빠른 효과가 있는 이니셔티브 (quick impact initiative)

- 34.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들에서의 즉각적인 진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장기 국가개발 전략들에 부합되게 적절한 국제 지원과 함께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들을 신속히 만들어 이행할 것을 결의함. 이는 사람들의 생활에 있어서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 목표 달성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약속함.

## 국제 경제의 결정방식과 제도적 문제점

- 35. 우리는 국제 경제의 결정과정과 규범설정에 있어서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책임을 재확인함. 이를 위해 국제 금융구조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브레튼 우드 체계(Bretton Woods Institutions) 내에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의 목소리와 참여를 확대시키는 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

- 36. 금융, 재정, 무역 체계내의 거버넌스(governance)와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재확인함. 또한 개방적이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원칙 중심적이며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계와 금융체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재 확인함.

- 37. 또한 개발을 뒷받침할 국제 금융구조의 중요 요소로서, 국가 개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국내 금융부문’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무 강조.

- 38. 더 나아가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과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 목표들과 행동들의 일관성과 조정/이행에 있어서, 유엔이 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다자간

금융 무역과 개발 기관들과 밀접히 협력하여 유엔 시스템내의 coordination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39.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한 바탕임. 역동적이면서 적법한 국제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도국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금융, 무역, 기술과 투자 패턴에 대처하며 국제 경제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거시경제 개혁과 구조개혁에 대한 지원, 대외 채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책, 개도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 향상을 포함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방법들을 취해야 함.

### 남-남 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40. 우리는 남-남 협력의 큰 잠재력과 업적들을 인정하며, 개발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최상의 실무경험과 진보된 기술협력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남북 협력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의 촉진을 장려함. 이러한 맥락에서, 신 아시아-아프리카 전략적 협력(New Asian-African Strategic Partnership) 과 다른 지역적 협력 메커니즘의 설립을 비롯해서 남-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Second South Summit에서 채택하고 도하 선언(Doha Declaration)과 도하 행동

계획(Doha Plan for Action) 에 포함한 '남반부 발전도상국 지도자들' (the leaders of the South)의 최근 결정에 주목함. 그리고 IFIs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개도국들의 그 노력-특히, 3자간 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을 지원하도록 장려함. 또한, 남-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GSTP 3차 협상의 시작에 주목함.

41. 남-남 협력을 위한 유엔 고위급 위원회(the High Level Committee of the UN on South-South cooperation)의 활동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개발 필요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UNDP 내 남-남 협력을 위한 특별 기관(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을 지원하도록 권고함.

42. 개도국들내 개발활동에 대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부 기금(the South Fund for Development and Humanitarian Assistance)' 의 잠재적 기여 뿐 아니라, 개도국들에 의해 시작된 OPEC 기금과 같은 구조들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함.

### 교 육

43. 우리는 '밀레니엄 선언' (Millennium Declaration)에서 구상한대로, 빈곤 퇴치와 다른 개발 목표들의 성취 - 특히, 문맹퇴치를

위한 기본교육과 훈련 - 에 있어서 공식적/비 공식적 모든 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함. 직업 교육과 훈련 - 특히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 인적 자원과 사회기반시설 역량의 형성, 빈곤층에게 권한 위임(empowerment)뿐 아니라 중, 고등교육의 확대를 위해 힘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00년 세계 교육 포럼(World Education Forum)에서 채택된 다카르 행동 프레임워크(Dakar Framework for Action)를 재확인하며, 2015년까지 초등교육 보편화를 위한 MDG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모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Education for All programmes)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빈곤 퇴치를 위한 - 특히, 극빈퇴치- UNESCO 전략의 중요성을 인정함.

44. 우리는 성차별과 성비 불균형을 없애고 여성의 교육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며, 모든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무료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을 재확인함. 또한, 국가 주도의 '국가교육계획' 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의 빠른 진전을 위한 이니셔티브'(Education for All Fast Track Initiatives)를 통해 모든 종류의 자원을 확대하고,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이니셔티브'(Education for All Initiatives)를 수행하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함.

45. 우리는 평화와 인간 개발을 위한 교육을 촉진시킬 것을 약속함.

## 농촌과 농업 개발

46. 국가 개발과 그 대응전략의 관점에서 식량 안보와 농촌/농업 개발은 적절하고 긴급하게 대처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그 토착/지역 사회들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 빈곤, 기아, 특히 어린이 영양실조의 퇴치가 MDGs의 성취에 있어서 결정적. 농촌/농업개발은 국내외 개발 정책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하며, 식량안보와 농촌/농업개발을 위한 생산적인 투자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우리는 개도국내 농업개발과 농업부문에서의 무역 역량 구축을 위한 지원을 증가시킬 것을 약속함. 생필품 개발 프로젝트, 특히 시장 기반 프로젝트들의 지원과 Second Account of the Common Fund for Commodities 하에서 준비를 위한 지원을 장려함.

## 고 용

47. 우리는 공정한 세계화(fair globalization) 과정을 강력하게 지지함.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및 완전고용의 목표를 위해,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이를 위한 적절한 일을 만들 것을 결의함. 이는 MDGs를 성취하기 위한 우리 노력의 일부분으로써 빈곤 감소 전략을 포

합한 국가 개발 전략들과 적절한 국내외 정책의 핵심 목적임. 이러한 방안들은 ILO 협약 182조에서 규정된 최악의 노동형태인 아동노동자(Child labour)들과 강제 노동자(forced labour)를 없애는 일을 포함해야 함. 또한 우리는 일터에서의 근본 원칙과 권리의 완전 존중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함.

### 지속가능한 개발 : 환경 관리와 보호

48. Agenda 21과 요하네스버그 실행 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의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이를 위해 모든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행동들과 방법들을 취하고, 리오 원칙(Rio principles)을 고려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이 노력들은 또한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 (경제 개발, 사회 개발, 환경 개발)의 통합을 촉진할 것임. 빈곤 퇴치, 생산과 소비의 불안정한 패턴 완화, 그리고 사회 경제 개발의 기반인 천연 자원의 관리와 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조건이자 포괄적인 목표임.

49.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에서 요구한 대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이끌어 가는 선진국들과 그 과정의 수혜국과 함께

그 패턴을 촉진할 것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재순환 경제 (recycling economy)를 촉진하려고 노력하는 개도국들을 지원.

50. 우리는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무공해 에너지를 만들며,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해야 하는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함.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긴급성과 결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임.

51. 기후 변화는 지구의 모든 부분에 걸쳐 영향을 끼칠 잠재력을 가진 심각하고 장기적인 도전 과제임. 우리는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과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를 포함한 다른 국제 조약들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의무들과 위임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조함. UNFCCC 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앞으로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기본 틀임.

52. 기후 체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 중 오존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UNFCCC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재 확약함.

53.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 UNFCCC 원칙들에 부합하는 - 적절하고 효과적인 국제 대응에 가능한 폭넓은 협력과 참여가 요청됨. 이러한 원칙들을 따라, 기후변화에 대처

하기 위한 장기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 지구적 대화에 임할 것을 약속함. 2005년 11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 11회 UNFCCC 당사국 회의(the Eleven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UNFCCC)의 중요성을 강조.

54. 우리는 양자간/지역간/다자간 구상을 포함해서, 무공해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관계들을 인정함.

55. 특별히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질적 국제협력력을 통해 더 심도깊은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함.

- 기술혁신, 깨끗한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환경보호를 촉진하며, 정책, 법 규제, 재정마련을 위한 기본 틀을 개선하며, 무공해 기술의 발전을 가속화시킴.
- JPOI에서 요청한 대로, 개도국의 에너지 필요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개도국의 민간 투자, 기술이전, 역량 구축을 강화함.
-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소들로 인한 기후변화 효과에 적응하는 것은 각국 특히, UNFCCC 4.8 조에서 언급된 가장 취약한 나라들의 우선적 과제이므로, 개도국들이 회복력(resilience)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안에 이 적응목표를 통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후변화의 역효과에 대처하면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 특히 군소도서개도국, LDCs, 아프리카 국가들을 계속적으로 원조함.

56.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

-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유엔 10년 교육 (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과 International Decade of Water for Life를 촉진시킴.
- 특히, 모든 차원에서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자원 동원, 기술이전과 역량구축을 통하여 사막화/땅의 황폐화의 원인에 대처하고, 황폐화의 결과로 인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하여, '극심한 가뭄과 사막화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의 사막화(desertification)를 막기 위한 유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며 강화함.
-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과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에 참여한 국가들은 그 협약과 의정서의 이행을 지원해야 함.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비율'을 상당히 줄이기 위해 다른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련된 협약들과 요하네스버그 의무사항들의 이행을 지원해야 함. 참여국들은 본 가이드라인(Bonn Guideline)과 유전자 활용 혜택의 균등하고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

는 국제 레짐을 염두하면서,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기본틀 내에서 협상을 계속해야 함. 모든 나라들이 그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 2010년까지 '생물학적 다양성의 감소비율'을 상당히 줄이며, '유전학 자원들과 혜택 공유 (benefit-sharing)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제 레짐의 고안과 협상에 관하여 현재진행중인 노력을 계속해야 함.

- 각 토착 지역주민들과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한 싸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임.
- 국내 입법을 통하여,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에 있어서 적절한 전통적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지식, 혁신적인 제도, 관행을 보존, 유지하고, 그러한 지식, 제도, 관행을 보유한 자들의 승인과 개입으로 더 폭넓은 참여를 촉진함. 그 과정으로부터 오는 혜택을 균등하게 공유할 것을 장려함.
- 최근 설립된 '인도양 쓰나미 경보와 이동 시스템 (Indian Ocean Tsunami Warning and Migration System)과 같이 기존의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역량위에 세워진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광범위한 조기 경보 체계를 세우기 위해 힘씀.
- 자연재해 감소에 관한 국제회의 (World Conference on Disaster Reduction)에서 채택된, 휴고선언 (Hyogo Declaration)과 2005 ~ 2015년 휴고 행동 프레임워크 (Hyogo

Framework for Action 2005-2015)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 특히, 재난 복구와 재건설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복구 단계에서 자연 재해에 취약한 국가들을 원조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조항을 완전 이행할 것.

- 국가개발전략의 일부분으로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계획을 준비하고, 밀레니엄 선언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따라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거나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 위생시설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도국들의 노력을 원조함.
-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빈곤퇴치를 촉진시킨다는 것을 염두하면서, 더 깨끗하고 알맞은 가격의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보존 기술들의 개발과 보급, 그러한 기술들의 이전 - 특히, 개도국에 무료 혹은 특혜조건과 같이 유리한 조건으로 상호동의 하 기술 이전- 을 가속화함.
- 산림부문과 다른 부문들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때 숲과 나무들이 MDGs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협의된 개발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한 원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유익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모든 종류의 숲의 보존/지속적 관리/개발을 강화할 것. 우리는 제6회 산림에 관한 유

엔 포럼(the 6th Session of the UN Forum on Forests)의 논의 내용들을 기대함.

- Agenda 21과 JPoI을 따라, 국제 화학물 관리에 대한 자발적이며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이행함으로써, 투명하며 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절차를 이용. 2020년까지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역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그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 동안 화학적으로 유해한 쓰레기들을 올바르게 관리함. 적절한 곳에 기술원조와 재정원조를 공급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유해한 쓰레기들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개도국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바다/대양과 관련된 문제들을 통합된 방법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의 협력과 조정을 향상시키며, 바다/대양의 통합 관리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함.
- 적당한 가격의 주택과 관련 사회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식하고, 빈민가 방지와 빈민가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며, 2020년까지 적어도 1억 빈민가 인구들의 생활에 상당한 개선을 이룰 것. UN Human Settlements Foundation 과 빈민가 개선 기금(Slum Upgrading Facility)을 지원하도록 장려함.
-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GEF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세 번

째 보충으로부터 나온 모든 공약들을 따라올해 성공적인 보충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

- 군소도서개도국을 통한 방사능 물질들의 이동, 운반을 중단하는 것은 그 개도국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임을 주목. 국제 법을 따라향해의 자유권을 인정. 각국은 특히 IAEA 와 IMO 의 보호 하에 상호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방사능물질의 안전한 해양운반과 관계된 대화와 협의를 강화시켜야 함. 그러한 물질의 운반에 관계하는 나라들은, 군소도서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Countries)을 비롯해서 그 밖에 다른 국가들과 계속적으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대화를 촉진할 것. 적절한 포럼들을 통하여 그러한 물질 운반과 관계된 안전, 정보공개, 책임, 안보와 보상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 규제 레짐(International Regulatory Regime)의 더 심도 깊은 개발과 강화가 필요함.

##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기타 보건 이슈

57.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과 다른 감염성 질병들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으며, 개발 목표의 달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과제임. 이러한 질병들과 다른 보건 이슈들은 지속적인 국제 대응이 요구된다는 인식과 함께, 국제 사회에서 나오는 재정기부와 상당한 노력들에 감사를 표함.

- 기존의 메커니즘과 파트너십을 통하여, 2015년까지 보건과 관련된 MDGs를 성취하기 위해 충분한 보건 인력들, 사회기반 시설, 관리 체계들과 물자들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economies in transition)들의 보건 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를 증가함.
- HIV 감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함.
- 예방/간호/치료/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포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더 강력한 리더십과 UN의 에이즈 관련 프로그램 뿐 아니라 결핵, 말라리아퇴치를 위한 국내/양자간/다자간 기금의 조성으로 '에이즈에 관한 회원국들의 의무선언' (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에 의해 선포된 모든 위임사항을 전부 이행함.
- 2010년까지 자원 증액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나라에게 보편적인 치료가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약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내 차별을 철폐하고, HIV/AIDS와 다른 질병들에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 (특히, 고아와 병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HIV 예방/치료/관리의 총체적인 수단을 개발하고 수행함.
- WHO의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에 대한 지원과 함께, 2005년 5월 제 58회 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한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의 제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
- 다자기관들과 국제 파트너들이 하나의 합의된 'HIV/AIDS 프레임워크' (이 프레임워크는 모든 협력자들의 일을 조율하는데 바탕이 됨)와 합의된 수원 국 차원의 모니터링과 평가 시스템하에서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Three Ones"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함. '국제 공여자들과 다자기관들 사이의 에이즈 조정활동 (AIDS Coordination) 개선에 관한 국제 전문가팀'의 중요한 권고들을 받아드리며 지지함.
-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설정된 대로, MDGs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산모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을 줄이며, 산모 보건과 양성 평등을 개선시키며, 에이즈와 싸우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에 이 목표를 통합시키면서 2015년까지 누구나 출산관련 보건 서비스에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운 백신, 살균제, 진료 도구, 조류독감과 사스와 같은 주요 유행성 질병과 열대병의 치료법 개발뿐 아니라 장기 재정마련, 학문과 산업부문 연구를 위해 적절한 공-사 협력을 포함하여 장기적인 재정모금 체계를 개선하며, 적절한 곳에선 구매 의무(Advance Purchase Commitments)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적절한 시장 인센티브를 추진함.

- 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국가에서의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의 긴급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활동 규모 증가를 장려함.

###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58. 우리는 여성의 진보가 모두를 위한 진보를 의미한다고 확신함. 우리는 베이징 선언과 그 행동을 위한 기본방침, 그리고 제 23회 총회의 특별회의 결과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MDGs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해 필수적임을 재확인함. 성차별을 없애고 성 평등을 위한 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빠른 시일 내에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 성차별을 없애며, 2015년까지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성차별을 철폐함.
  - 여성의 재산소유와 상속에 대한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며, 여성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함.
  - 출산과 관련된 보건 서비스에 모두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
  - 노동시장, 지속적인 고용과 적절한 노동자 보호에 있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
  - 토지, 대출, 기술을 포함하여 생산적인 자원과 자산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함.
  - 국제 인도주의 법과 국제 인권법 하에서 각국의 의무사항을 쫓아, 소녀들과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행사시 형사면책이 되는 규정을 없

애고, 시민으로서의 그들의 보호를 강화하며,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차별을 없앴.

- 여성의 정치 참여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통하여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체계에 여성대표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킴.

59. 성 평등을 위한 수단으로 여성의 차별교육 철폐가 중요함. 이를 목적으로, 우리는 모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의 고안하고,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에서 성 차별적 교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 더 나아가 성 평등과 관련된 유엔의 활동 역량을 강화할 것.

### 개발을 위한 과학과 기술

60. ICT를 포함해서 과학과 기술이 개발목표들의 성취를 위해 핵심적이며, 국제적 지원이 개도국들의 기술진보와 생산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함.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보건, 농업,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환경 관리, 에너지, 산림, 기후변화 효과의 전 영역에 있어서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공-사 부문간 자발적 협력을 포함해서 자발적인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원을 고려함.
  - 적절한 수준으로, 개도국들에 친환경적 기술과 그에 상응하는 노하우의 이전과 확산을 촉진하

- 며 그것에의 접근이 용의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발을 위한 국내 역량구축에 있어서 일차적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개도국들의 모든 노력을 지원함.
  - 태양열, 바람의 힘, 지열과 같은 대체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더 많은 노력들을 촉진하며 지원함.
  - 국내/국제 차원에서 - 지식을 확대하고 상호 합의한 조건 위에 기술을 이전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 공적/사적 투자 및 국내/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실행함.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단들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가를 위해 새로운 농업기술을 이용하려는 개도국들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들을 지원함.
  - 디지털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람중심의 평등한 정보 사회를 구축하고, 개발을 위해 정보와 통신 기술들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함. “지식사회에 관한 제네바 세계 정상 회담”(Geneva phase of the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의 결과를 이행함으로써 그리고 2005년 11월 튀니스에서 열릴 그 정상회담의 두 번째 단계의 성공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함.
  - 이러한 관점에서, 디지털 연대 기금(Digital Solidarity Fund)의 설립을 환영하며, 그 기금에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을 장려함.

## 이민과 개발

61. 국제 이민과 개발사이의 연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이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 태생지(countries of origin), 정착국가(destination), 및 이동(transit)과정 중에 머무는 나라에 미치는 - 문제들과 기회들을 다룰 필요 있음. 국제적인 인구이동이 국제사회에 피해뿐 아니라 이익도 가져옴. 각 국의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국제 이민과 개발에 관하여 다각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할, ‘2006년 인구이동과 개발에 관한 유엔 총회 고위급 회담’을 기대함.
62. 우리는 이민자,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일련의 방법들을 취할 것을 결의함.
63. 우리는 이민자들이 개도국으로 송금할 때, 송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과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관계자들의 노력을 장려함.

## 특별한 필요에 처한 국가들

64. LDCs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하며, 브레튼 우드 체계를 포함한 유엔 체계하의 모든 관계 기관들과 각

국들이 (2001 ~ 2010) 10년간 LDCs를 위한 브루셀 행동 프로그램의 목표를 적절한 시기 내에 적절한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노력을 행할 것을 권고함.

65. 우리는 내륙 개도국들이 직면한 모든 필요들과 도전과제들을 인식하며,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과 '무역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 제 8 차 총회'에서 채택된 '상파울로 협의'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통하여, 그러한 나라들의 필요에 재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함. 유엔 지역별 위원회와 기관들이,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의 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비용 방법론"(time-cost methodology)을 만들 것을 권고함. 또한 LLDCs의 경제를 다자간 무역 체계 내에 통합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갖게 되는 LLDCs의 특별한 염려와 어려움들을 인식함. 이러한 관점에서, 내륙 개도국들과 과도기 경제국들을 위한 '이동 이전 협력'(transit transport cooperation)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본구조 하에 그와 같은 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들에 대처하려고 하는 알마티 각료 선언(Almaty Ministerial Declaration)과 알마티 행동 프로그램(Almaty Programme of Action)의 온전하고 시기적절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

66. 군소도서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와 취약부분

들을 인식하며, 그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회의에서 채택된 '모리셔스 전략'(Mauritius Strategy), '바베이도스 행동 프로그램'(Barbados Programme of Action)과 유엔총회 제 22회 특별 총회 결과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그 국가들의 필요와 취약부분들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

67. 또한, 분쟁에서 벗어난 신흥국들과 자연재난으로부터 복구되고 있는 나라들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지원이 필요함.

### 아프리카의 특별한 필요 충족

68.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의무를 잘 이행함으로써 상당한 진보를 이룩한 것을 환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인권, 굿 거버넌스, 건전한 경제 관리, 성 평등 증진을 위해, NEPAD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참여와 함께, 진보되고 강화된 제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통치구조와 개발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격려함. 또한, 2010년까지 연간 250억불 씩 아프리카 ODA 증가 약속과 함께 아프리카 개발 노력에 지원하겠다는 G8 국가들과 EU의 최근 결

- 정을 포함하여 아프리카 협력자들에 의해 취해진 최근 결정을 환영함. 우리는 2015년까지 MDGs를 성취하지 못할 것 같은 유일한 대륙인 아프리카의 실질적 필요들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확약함.
- 대내외적인 재정 자원들을 동원하고, 다자간 금융기관에 의한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지도자들에 의해 고안된 프로그램들에 일관성있게 지원함으로써 NEPAD와 협력을 강화함.
  - 2015년까지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뿐 아니라 양질의 완전 무료 의무 초등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아프리카의 약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아프리카의 공적, 사적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기본 틀로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관계'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와 함께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World Bank,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사회기반시설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함.
  - HIPCs를 위한 G8 국가들의 최근 제안에 따른 다자간 채무의 100% 탕감을 포함하여, 대외적 채무 문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촉진함. 경우에 따라 적절한 경우 HIPCs 국가가 아니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채무 탕감을 포함해서 상당한 채무 면제를 추진함.
  - 목표가 확실한 무역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국제 무역 체계로 완전히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함.
  - 생필품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들의 생필품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원하고, 생필품 가격 위험 관리(price-risk management)를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와 더불어 시장 기반(market-based) 구조를 구축하기로 결정함.
  - 농업생산성을 높이려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노력들을 - 아프리카 녹색혁명의 부분으로서 NEPAD의 포괄적인 아프리카 농업 개발(NEPAD's Comprehensive African Agricultural Development Plan)에서 제시한대로 -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완함.
  - 유엔의 보조 하에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려는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과 지역적 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격려하며 지원함. 이러한 맥락에서 G8 국가들의 아프리카 평화 유지를 위한 지원 제안을 환영함.
  - 아프리카에서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피해를 입지 않는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원조를 제공함. 201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에이즈 치료에의 보편적인 접근이 최대한 가능해지도록 원조를 제공함. 제약회사들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치료로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포함한 약품들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보건 체계들을 강화함으로써 말라리아, 결핵과 다른 감염성 질병과 싸우기 위해 가능한 증여의 형태로 양자/다자 원조를 증가시킬 것.

### Ⅲ. 평화와 집단 안보

69. 우리는 긴급하고, 집단적이며 더 결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다양한 범주의 위협에 처해있음을 인식.
70. 헌장을 따라,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엔의 모든 기구들이 그들의 위임사항을 따라 서로 협력할 것이 요구됨.
71. 우리는 상호의존적이며 지구적인 세계에 살고 있으며, 오늘날의 많은 위협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것은 국제법과 헌장을 따라 지구적/지역적/국내적 차원에서 씨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정함.
72. 그러므로 많은 위협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개발, 평화, 안보와 인권 문제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어떤 나라도 전적으로 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들은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단 안보체계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하에 안보에 관한 논의의 일치점을 찾아야 함.

### 태평양 분쟁 해결

73. 유엔 헌장 6장의 규정을 쫓아 평화적인 수단으로 혹은 필요한 곳에는 국제 사법재판소의 개입에 의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각 국의 의무를 강조함.
74.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쫓아 무력 분쟁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력분쟁 방지를 위한 유엔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직면한 안보와 개발 문제들에 대처하려는 수단으로 무력 분쟁 방지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의 의무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함.
75. 더 나아가, 무력분쟁의 방지와 분쟁 해결을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접근이 중요하며, 안전 보장 이사회, 총회,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총장이 각각 헌장의 위임사항을 쫓아 서로의 활동에 있어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
76. 분쟁의 중재를 비롯해서 사무총장의 중재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며, 이 분야에서 그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원할 것임.

### 헌장에 입각한 무력사용

77.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어떠한 방식으로의 무력 사용과 위협을 삼갈 것을 거듭 강조

함. 유엔을 이끌고 있는 목적과 원칙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며, 모든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권 존중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간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들을 취하며, 이를 위해 부당한 침략행위와 평화 위협의 방지/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 체제를 결성하며, 국제법과 정의, 국제 분쟁의 조정과 해결 원칙에 부합하는 평화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임을 재확인함.

78. 다자간 절차(multilateral process)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현장과 국제법의 원칙들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국제적인 문제들과 도전과제들에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함. 더 나아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강조함.
79. 또한, 현장의 조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충분하다는 것을 재확인함. 더 나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강제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을 재확인함. 현장의 목적과 원칙을 쫓아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
80.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음. 또한 현장의 관련 조향을 따라, 유엔 총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계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테러리즘

81.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한, 그것이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행해지든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테러를 배척함.
82. 우리는 사무총장이 '반-테러 전략' 요소들을 규명한 것을 환영함. 이러한 요소들은 반테러에 대한 국내/지역/국제적 차원에서의 포괄적이며 조정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이행하려는 관점에서 지체 없이 총회를 통해 더욱 논의 발전되어야 함. 또한 그 요소들은 테러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문명(civilizations) 사이의 대화, 포용,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구상들을 권고함.
83. 제 60회 유엔총회 동안 국제 테러에 관한 포괄적인 조약을 만들고자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
84. 모든 종류의 테러와 시위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책을 만들기 위해 유엔 후원 하에 고위급 회담을 நட득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고안해야 함.
85. 테러와 싸우기 위한 국제 협력은, - 유엔헌

- 장, 관련 국제 협약들과 의정서들을 포함한 - 국제 법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함. 각 국은 테러와 싸우기 위해 취한 방법들이 국제법상, - 특히, 난민법과 국제 인도주의 법 - 부합될 것을 보장해야 함.
86. 모든 국가들은 테러리스트 활동의 지원, 조직, 격려, 훈련의 제공 등을 삼갈 것이며, 자국 영토가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함.
87. 테러와 싸우는데 있어서 유엔이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양자간 혹은 지역적 협력의 핵심적인 공헌- 특히, 법 집행 협력과 기술 교류의 실질적인 차원에서 - 을 강조함.
88.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기 위한 국내적 및 지역적 역량을 구축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원조할 것. 테러와 싸우려는 국가를 보조하기위해 유엔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유엔의 활동들 간 조율(coordination)을 강화하기위해 사무총장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각각 그 권한 내에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89. 테러 희생자를 지원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함.
90.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보고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반테러관련 산하기관들의 다양한 임무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반테러에 대한 모니터링과 집행 역할을 강화해야 함. 안보리의 결의들(resolutions)을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세 개의 적격 산하 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야 함.
91. 핵 테러행위의 방지(suppression of acts of nuclear terrorism)를 위한 국제 협약의 조속한 효력발생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며, 각국이 반-테러에 관한 12개의 다른 국제 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하여 회원국이 되고 그것들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함.

## 평화유지

92.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분쟁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복잡한 상황들에서의 복합적인 임무이행을 포함하여 최근 수년간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서 나타난 공로들에 주목하며, 유엔 평화유지활동기들의 공헌을 높이 평가함. 그리고 전쟁행위에 대처하고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역량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할 필요성 강조. 더 나아가 위기상황에서의 평화유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배치능

력의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개발할 것을 권고함. 유엔 평화유지 임무 중 치안 유지를 위한 상설 경찰력을 위해 초기 단계의 운영능력(initial operating capacity) 형성을 지원하고, 조연과 전문지식의 제공을 통해 기존의 임무를 원조함.

93. 유엔 현장 제8장에 입각한 지역 기구들(regional organizations)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공헌을 인정함. 유엔과 지역 기구들 사이에 예측 가능한 협력관계와 조정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특히 아프리카에 주어질 특별한 필요들, 강한 아프리카 연합의 중요성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원함.

- 빠른 병력의 배치(deployment), 대기(standby), 가 교 의 준 비(bridging arrangements)와 같은 것을 위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럽 연합과 다른 지역적 단체의 활동을 지원함.
- 아프리카 연합과 함께 역량구축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함.

94. 우리는 모든 종류의 소형무기 불법거래를 방지/퇴치하기 위한 2001 유엔 행동 프로그램의 이행을 지원함.

95. 또한, 반-개인 지뢰금지 협약(Anti-Personnel Mine Ban Convention)과 특정 비핵무기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에 대한 2차 개정의정서(Amended Protocol II)의 당사국들은 그들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우리는 각 국이 지뢰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게 더 광범위한 기술 원조를 제공할 것을 요청함.

96. 유엔 평화유지군에 의한 성적 착취와 남용에 관한 사무총장 고문(the Secretary-General's Advisor on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by UN Peacekeeping Personnel)의 권고들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권고들을 기반으로 관련 총회 결의들에 채택된 대책들은 지체없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함.

## 평화구축

97. 지속가능한 평화 성취를 목적으로, 분쟁 후 평화유지와 화해에 대하여 명확하고 조정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 분쟁 후 복구, 재통합, 재건축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신흥국들의 특별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놓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제도적 메커니즘이 필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유엔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며, 우리는 정부간 자문기관으로서 평화구축 위원회(Peacebuilding Commission)의 설립을 결정함.

98. 평화구축 위원회의 주 목적은 육군자원 (marshal resources)을 위해 모든 적합한 행위자(actors)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며, 분쟁 후 평화구축과 회복을 위한 통합된 전략을 자문하며 제안하는 것임. 평화구축 위원회는 분쟁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재건축과 기관 설립에 집중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놓기 위해 통합된 전략들의 개발을 지원해야 함. 더 나아가, 평화구축 위원회는 유엔 내부/외부의 모든 적합한 행위자들의 coordination을 개선하고, 최상의 실무를 개발하고, 조기 회복 활동을 위한 예측 가능한 자금지원을 보장하도록 도우며, 분쟁 후 회복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되는 기간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고들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평화구축 위원회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 회원국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행동해야 함.

99. 평화구축 위원회는 국제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적합한 조직과 행위자들에게 유엔 문서로서 그 논의사항들과 권고사항들을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함. 평화구축 위원회는 총회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100. 평화구축위원회는 다양한 형태로 모여야 함. 제100조에서 규정된 대로 조직위원회의 초청을 기반으로 모이는 특정국가회의 (Country-specific meetings of the

Commission)는 조직 위원회 회원들을 비롯해 다음의 대표들을 회원으로 포함해야 함.

- 고려중인 나라
- 분쟁 후 절차(post-conflict process)에 관여된 지역에 있는 나라들과 구제 혹은 정치적 대화에 포함된 다른 나라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기구들과 소지역기구들(sub-regional organizations).
- 복구 노력에 관여한 군대와 시민경찰의 주요 재정 기부자들
- 영역별 상임 유엔 대표부들과 관련 유엔 대표자들
- 관련된 지역/국제 금융기관들

101. 평화구축 위원회는 조직의 절차와 문제들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영구적인 조직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상임 회원국들을 포함한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들
- 전후 복구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 지역 그룹 (regional group)에서 선출된 - 경제사회이사회 회원국들
-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설 평화구축기금 (the Standing Fund for Peacebuilding)을 포함하여 유엔 기금, 프로그램, 기구들의 예산에 자발적으로 가장 많이 기부한 국가들

-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엔 임무에 있어서 군대와 시민경찰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들
- 102. 사무총장 뿐 아니라 World Bank, IMF와 다른 기관 공여 자들의 대표들은 그들의 위치에 상응하는 대우로 평화구축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되어야 함.
- 103. 분쟁 후 평화구축을 위해, 기존의 도구들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자발적 기부로 지원되는, 다년간 '상설 평화구축기금'을 설립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평화구축 기금의 목적 중 하나는 평화구축활동과 복구를 위한 적절한 금융의 이용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의 빠른 조성을 보장하기 위함.
- 104. 평화구축위원회를 원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적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 사무국 내 그리고 기존 자원들로부터 나온 전문가 - 소규모 '평화구축 지원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이 사무소는 전문적인 활동에 최적의 될 것임.
- 105. 평화구축 위원회는 2005년 12월 31일내로 그 활동을 시작해야 함.

### 제재 규정

- 106. 제재규약(sanctions)은 무력 사용에 의지하

지 않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현장하의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제재들은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취해져야 하며, 안전보장이 사회에 의해 결정된 제재조치에 부합되고, 인구와 제3세계를 위하여 사회경제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결과를 포함하여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이행될 것을 보장하도록 결의함.

- 107. 제재 조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행해져야 하며,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재검토되고,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한시적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한번 달성되고 난 후에는 그 조치를 해제해야 함.
- 108. 우리는 사무총장의 지지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함. 제재의 이행과 효과의 모니터링을 개선할 것. 제재 조치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할 것. 그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 현장에 따라, 제재조치로 야기된 특별한 경제적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 109. 또한 우리는 사무총장의 지지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함. 개인 및 단

체들을 재제조치의 대상으로 설정할 때와 인도주의적인 해택을 줄 때 뿐 아니라 그것을 중단할 때 공정하고 분명한 절차들이 존재하도록 보장할 것.

110. 제재 규약(sanctions)들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함.

### 초국적인 범죄

111. 인신 매매, 밀수출입, 세계 마약 문제, 소규모 무기의 불법거래를 포함한 초국가적인 범죄와 그러한 범죄에 대해 취약한 국가에서 야기되는 개발, 평화와 안보, 인권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심각하고 진지한 관심을 표함. 우리는 그러한 초국가적 범죄와 싸우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함.
112. 인신매매가 반인류적인 심각한 문제임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대처방안이 요구됨. 이를 위하여, 모든 나라들이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와 싸우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마련하고 강화할 것을 요청함.
113. 조직범죄와 부패에 관하여 관련 국제협약들에의 가입을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든 나라에 대하여, 그 협약들에 가입할 것과 그러한 국제협약들을 국내 입법에 편입시키

고 사법체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국제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요청함.

114. 불법 마약의 수요와 공급 모두를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국내 전략들과 국제 협력을 통하여, 세계 마약문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결심과 공약을 재확인함.

115.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권한 내에서 '마약과 범죄에 관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함.

### 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116. 분쟁의 방지와 해결에 있어서, 그리고 평화구축에 있어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함.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2000)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우리의 위임사항들을 재확인함.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결정력을 증가시킬 필요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 있어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완전보장하며, 차별을 철폐한 성역할 관점(gender perspective)의 중요성을 강조. 무력분쟁과 성적 착취, 폭력, 남용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소녀들과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모든 침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성 폭력을 조사, 방지, 처벌하기 위한 전략을 고안하고 실행할 것을 약속함.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아동 보호

117. 무력분쟁 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함. 이와 관련되어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상당한 진보와 혁신을 환영함.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 1612 (2005)를 환영함. 우리는 각 국가들이 아동 인권에 대한 협약과 그와 관련된 “무력분쟁에 있어서 아동의 연루에 관한 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의 기준을 고려하도록 요청함. 또한 군대와 무장단체들에 의한 국제 법에 어긋나는 무력 분쟁에 있어서 어린이 고용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금지시키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취할 것.
118.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아동에 대한 심각한 학대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들에 의한 책임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취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함. 또한, 사회의 재건설과 재통합을 위해, 무력 분쟁 하에 있는 어린이들이 교육과 같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재확인함.

## IV. 인권과 법치

119. 우리는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촉진할 것을 재 약속하며, 그것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유엔의 보편적인 핵심 가치와 원칙에 속해있음을 인식하여, 유엔의 모든 기관들이 그들의 위임사항(mandates)을 쫓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촉진시킬 것을 요청함.
120. 우리는 유엔헌장, 세계 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인권과 국제 법에 관계된 다른 문서들을 쫓아 모든 이를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보존/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충족시키려는 모든 국가들의 진지한 약속을 재확인함.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속성은 논란의 여지없이 분명함.

## 인 권

121.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며, 개인적이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하는 것임. 모든 인권은 동등한 위치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루어 져야 함. 국내와 지역적 특수성,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면서, 모든 나라들은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에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촉진해야 함.

122. 헌장을 따라,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사회적 신분, 재산, 출신 혹은 계급과 같은 모든 종류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함.
123. 더 나아가, 모든 인권, 개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유엔 인권 기구를 강화할 것을 결의함.
124. 국제사회가 직면한 광범위한 인권 난제들 - 특히 기술적인 원조와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의 영역에서 - 에 대처해야 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고등판무관의 행동 계획(plan of action) - 정기 예산 하에서, 광범위한 지리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성비 균형을 맞춰 유능한 스텝들을 고용하고 개도국들의 '우선순위 프로그램(priority programmes)'들을 고려하여, 정기예산과 기부금 사이의 균형을 효과적으로 잘 맞추면서 다음 5년 내에 정기 예산 자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식으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하기 위한 행동계획 - 에 주목하면서,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의 역할(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고, 유엔 총회, 경제사

회이사회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유엔 조직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적극 지지함.

125. 더 시기적절한 보고, 합리적으로 개선된 보고 절차, 각 국의 보고 능력(reporting capacity)을 강화하고 권고사항들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원조 같은 것을 통해서, 인권 조약 기구들의 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을 결의함.
126. 인권의 보호와 촉진을 국내 정책에 통합시키며,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과 다른 관련 유엔 기구들 사이의 더 긴밀한 협력 뿐 아니라, 모든 유엔 체계에 걸쳐 인권을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을 결의함.
127. 지방, 국내, 지역과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주민들과 협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 신장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가며, 가능한 빨리 '원주민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최종안이 채택되도록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재확인함.
128.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인권 의제에 여성과 아동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가능한 모

든 방법으로 그들의 인권신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 있음.

129. 장애인들이 차별없이 그들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 또한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의 포괄적인 초안을 마무리 지을 필요를 재확인함.

130. 자국민 또는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계층의 권리를 보호/촉진하는 것이 정치, 사회적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며,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의 전통을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을 주목함.

131. 우리는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의 이행을 포함하여, 모든 차원에서 인권교육과 학습의 촉진을 지원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행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함.

### 국내 유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132. 국내 유민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기본지침으로서 '국내 유민에 대한 주도적 원칙'(the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인정하며, 국내 유민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취할 것을 결의함.

## 난민 보호와 지원

133. 난민 이동의 근본원인에 대처하고, 난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귀환을 이끌어내며, 장기적인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난민의 이동이 국가간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는 난민 보호원칙을 지킬 것과 난민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처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또한 연대와 책임공유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난민과 그들의 본국을 원조하면서 그들을 지원할 것을 결의함.

## 법 치

134. 국내와 국제적 차원에서 법치의 보편적 준수와 이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함.

■ 헌장과 국제법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의무사항을 재 확약함. 이것은 국가 사이의 평화적인 공존과 협력을 위해 필수적임.

■ 매년 조약체결(annual treaty event)을 지원.

■ 시민 보호와 관련된 모든 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가입을 격려함.

■ 국가가 계속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과 정책들을 없애고자 노력하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법과 실

무를 채택하도록 요청함.

- 법치를 촉진하려는 유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무총장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기존의 적법한 절차를 따라 사무국내 법률지원부(law assistance unit)의 원칙을 세우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함.
- 국가 간 분쟁을 재판함에 있어서 국제 사법 재판소, 유엔 사법기관의 중요한 역할과 그 일의 가치를 인정하며, 아직 국제사법재판소의 사법권을 받아드리지 않는 국가들은 그 지위에 맞게 그것을 받아드릴 것을 요청함. 자발적인 차원에서 '국제 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의 해결과정에 있는 국가를 원조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신탁 기금'(the Secretary-General Trust Fund to Assist States in the Settlement of Dispute throug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국제 사법재판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함.

## 민주주의

135. 민주주의란, 삶의 모든 면에서, 각자가 자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의사를 기반으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가 치임. 민주주의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지역이나 나라에 국한된 민주주의 단일 모델은 없다는 것과 주권과 자

기 의사결정권 존중의 당위성을 재확인함. 민주주의, 개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것임을 강조.

136.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그들을 돕는 유엔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을 결의함. 우리는 유엔 민주주의 기금(Democracy Fund) 설립을 환영함. 설립된 자문위원회(advisory board)는 다양한 지정학적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함. 민주주의 기금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들이 기존 유엔 활동을 적절히 고려해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함.
137. 우리는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들이 그 기금에 기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도록 요청함.

##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인구를 보호할 책임

138. 각 개별 국가들은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 범죄, 인종 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 이 책임은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통해, 그러한 범죄와 그 범죄

유인(incitement)을 예방할 것을 포함.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아드리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것임. 절적인 방식으로, 국제사회는 각국이 이러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며, 유엔이 조기 경고(early warning) 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39. 현장의 제6장, 8장 규정을 따라 국제사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류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을 통해 적절한 외교적, 인도주의적 그리고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사용할 책임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적 수단이 적당치 않고 국가가 그 국민들을 이러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데 역부족인 경우, 유엔 현장 제 7장 규정을 따라 안전 보장 이사회를 통해, 시기적절하고 결정적인 수단으로 집단행동을 취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함. 총회가 유엔현장과 국제법의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또한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 이러한 반인류적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 구축을 도우며, 위기 직전의 긴장하에 있는 국가들 혹은 분쟁이 발발한 국가들을 원조할 것을 약속함.

140. 우리는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유엔 특별 자

문기관(UN Special Advisor for the Prevention of Genocide)의 임무를 전적으로 지지함.

## 아동의 권리

141. 우리는 국내 폭력, 성적 남용과 착취, 그리고 밀매의 모든 형태 뿐 아니라 무력분쟁에 어린이들이 연루되고 영향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음. 우리는 그러한 아동들의 상황을 개선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내 ‘포용과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력 정책들을 지지함.

142.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및 다른 견해, 국적, 사회적 계급, 재산, 장애의 여부, 그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함.

## 인류 안보

143. 모든 사람이 빈곤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권리를 강조함. 모든 개인, 특히 연약한 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human potential)을 개발시키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두려움과 그 결핍으로부터 자유 함을 누릴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인정. 이러한 목적으로, 총회에서 인간 안보의 개념을 토론하고 정의하려는 우리의 입장을 표명함.

### 평화 문화(culture of peace)와 문화, 문명, 종교간 대화의 시도

144. 우리는 총회에서 채택된 ‘문명 간 대화를 위한 지구적 의제’ (Global Agenda for Dialogue among Civilizations)와 그 행동 계획(its Programme of Action)뿐 아니라, 평화문화에 관한 선언과 그 행동계획, 종교를 초월한 협력에 관한 대화를 포함하여 문화와 문명 간 대화에 대한 다른 시도들의 가치를 재확인함. 우리는 지방, 국내,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문화와 대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며, 사무총장은 그 실행을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함.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또한 2005년 7월 14일 사무총장에 의해 발표된 ‘문명의 연대 시도’ (Initiative of the Alliance of Civilizations)를 환영함.
145. 스포츠가 평화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포용과 이해의 분위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스포츠와 개발 행동 계획(A Sport and Development Plan for Action)’ 을 이끌어 나갈 제안들을 위해 총회에서 토론할 것을 독려함.

### V. 유엔 체계의 강화

146. 현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하여 현 시대의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엔의 역량뿐 아니라 그 권위와 효율성 또한 강화시키려는 맥락에서, 유엔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우리의 임무를 재확인함. 우리는 유엔의 정부간 조직들을 활성화 시키고 그들이 21세기의 필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함.
147. 현장 하에 위임된 각 임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엔 조직들은 더 효율적인 유엔을 만들기 위한 공통의 노력에 있어서 필요한 협력과 조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148. 유엔의 임무 수행을 더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 더 적합하고 시기적절한 자원들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개혁된 유엔은 전체 회원국들에게 더 민감하고, 그 기본원칙에 더 충실하며, 그 위임사항을 성취함에 있어서 더 적합하게 개혁되어야함.

## 총 회

149. 기준 설정 과정과 국제법의 체계화에 있어서의 총회의 역할 뿐 아니라, 총회가 유엔의 최고 심의, 결정, 대표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지위에 있음을 재확인함.
150. 총회가 그 역할과 권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채택한 방법들과 총회 의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환영하며, 우리는 그것들이 온전히 신속하게 이행될 것을 요청함.
151. 유엔 기구들 각자의 임무사항을 쫓아, 유엔에 의한 조정 (coordination)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더 원활한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와 다른 중요한 기관들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

## 안전보장 이사회

153. 유엔이 더 광범위한 것을 대표하고, 더 효율적이고 투명해지기 위해, 더 나아가 그 결정의 효과, 적법성,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을 개혁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필수요소로서 안전보장 이사회의 우선적 개혁이 필요.
154. 우리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회원국의 책임성을 향상시키

며,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 업무 수행 방법을 계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을 권고함.

## 경제 사회 위원회

155. 유엔 헌장과 총회가 경제사회이사회에 부여한 역할을 재확인하며, MDGs를 비롯한 주요한 유엔 회담과 회의에서 합의된 국제 개발 목표의 이행뿐 아니라 조율, 정책검토, 정책을 위한 대화와 경제사회 개발 이슈에 대한 권고를 위해, 경제 사회 이사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 있음.

■ 경제, 사회, 환경, 인도주의적인 분야에서 지구적인 정책과 경향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화와 협력관계를 촉진함. 이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국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개발에 더욱 신속하게 잘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할 뿐 아니라, 국제 금융기관, 사적 부문과 시민사회, 새롭게 나타나는 글로벌 정책, 경향, 행동과 함께 회원국들 사이의 고위급 연계를 위한 질적으로 우수한 토론장으로서 기능할 것임.

■ 전략, 정책과 재정모금을 포함한 국제 개발협력에 있어서의 경향들을 검토하기 위해 2년마다 한번씩 고위급 개발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다른 개발 파트너들의 개발 활동사이의 일관성을 더 향상시키며, 유엔의 규범적이면서도 기능적인 활동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킴.

-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을 포함해서 주요한 유엔 회의와 회담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각자의 임무에 따라, 다른 국제 기구들 뿐 아니라 그 기능적이고 지역적인 위원회들도 포함해서, 그 진전을 평가하기 위한 장관급 실무 조사를 실시함.
- 더 개선되고 조정된 유엔의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재난을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긴급 구호에 대처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들을 지원하고 보완함.
- 기금, 프로그램, 기구들 사이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위임사항들과 활동들의 중복을 피하면서, 이들 기관의 전체적인 조정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156. 위의 기능들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이사회의 업무 체계, 의제, 현재 업무 방법들이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

### 인권 위원회

157. 유엔 인권 기구를 더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의무를 쫓아, 인권 위원회를 형성할 것을 결의함.
158. 위원회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인권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보장을 촉진할 책임 있음.

159. 위원회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포함해서 인권 침해의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그것에 관하여 권고안을 만들어야 함. 위원회는 또한, 유엔 체계내의 효과적인 조율과 인권 차별의 철폐를 촉진해야 함.
160. 제60번째 회기동안, 위임사항, 형식, 기능, 규모, 조합, 멤버십, 일하는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포괄적이며 투명하고 열린 협상을 끝마칠 수 있도록, 총회 의장에게 요청함.

### 사무국과 관리 개혁

161. 현장의 원칙과 목표에 효과적으로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무국이 필요함. 사무국 스텝들은 조직의 신뢰성, 투명성과 통일성의 문화내에서 현장의 제100조에 부합되게 행동해야 함.
- 신뢰성과 감시기능 강화, 관리 수행 (management performance)과 투명성 개선, 윤리적 행동 강화를 위하여 사무총장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개혁방법을 인정하며, 그를 초청하여 개혁 이행으로 인한 진전에 대해서 총회에 보고하도록 함.
  - 사무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
  - 현장 제 101조에 따라, 적합한 지리학적 배분

법칙을 고려해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효율성, 능력,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윤리적인 행동과 유엔 직원들의 재정공개범위 확장을 보장하고, 조직 내 비리를 폭로한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사무총장의 노력을 환영함. 우리는 사무총장이 기존의 행동기준을 양심적으로 적용하고, 모든 유엔 직원들에 대한 윤리규범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함.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사무총장이 만들기로 했던 독립적 지위를 가진 '윤리 부서(ethics office)'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 60회 총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함.
- 유엔이 그 임무사항을 이행하고, 유엔총회에서 합의된 우선순위들과 예산 원칙을 존중하면서 그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유엔에 필요한 자원들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할 것을 약속함. 모든 회원국들이 기구의 비용에 관한 그들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함.
- 유엔활동의 우선순위가 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관점에서,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합의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따라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보와 통신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포함한 최선의 관리 실행지침(management practices)을 채택하여,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162. 유엔헌장 제 97조를 따라, 사무총장은 기관의 행정적인 수상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 우리는 사무총장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총회에 제안서(proposals)를 만들도록 함.

163. 유엔의 효과적인 관리와 기구 혁신을 강화시키려는 사무총의 노력에 찬사를 보냄.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재정과 인적 자원을 더 능률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그 원칙과 목표, 임무사항에 더 잘 부응하기위해 추가적인 개혁들을 결단할 필요 있음. 사무총장은 2006년 1/4 분기의 결정과 고려사항들을 위하여 총회에 관리개혁(management reforms)을 이행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함.

- 유엔 예산, 재정, 인력 자원을 위한 정책, 규제, 규칙들이 기구의 현 필요에 대응할 수 있고, 업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2006년 1/4 분기 동안 결정사항을 위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총회에 보고해 줄 것. 사무총장의 평가와 권고사항들은 인적 자원 관리와 예산 집행과정의 개혁에 대하여 기존에 진행중인 방법들을 고려해야 함.
- 우리는 유엔 프로그램들을 강화하고 최신화(update)하여 그것이 회원국의 현 요구사항

들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결의함. 이를 목적으로, 총회와 다른 관련 기관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결의문에 내포되어 있는 5년 이상 지난 모든 임무사항(mandates)을 검토할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정기적인 검토 작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총회와 다른 기관들은 2006년 동안 이러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필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함. 사무총장은, 총회가 사전에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침변경(programmatic shifts)의 가능성들을 포함한 분석과 권고사항들과 함께 이 검토 작업을 촉진해야 함.

- 비용 지표(an indicator of costs)와 그것이가지고 있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해서, 인사 구조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의 정리해고에 관한 기본 틀/framework)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서

**164.** 우리는 유엔의 감시와 관리 체계를 상당히 개선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 OIOS(the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의 기능상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를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 회계와 감사를 위한 내부감시 기관(the Office of Internal Oversight Services)의 전문성, 역량과 자원들은 상당히 강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긴급한 문제임.
-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와 감시 구조의 성격

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은, 특별기구들의 회계와 감시체계를 포함해서 유엔에 대한 독립적인 외부평가서 - 관리 책임과 역할을 포함해서 -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이 평가는 거버넌스 제도(governance arrangements)의 포괄적인 검토로 이루어져야 함. 사무총장에 의해 만들어진 그 평가와 권고사항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제 60회 총회 기간 내에 가능한 신속하게 필요한 방법들을 채택할 것을 요청함.

- 감시 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들이 더 필요함. 따라서 우리는 사무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함. 임무내용(mandate), 구성, 선택 과정과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포함해서, 독립적인 감시 자문 위원회의 설립을 고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60회 총회에 제출할 것.

- 유엔 사무국에 대한 내부감시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내부 감시 시스템이 필요한 유엔 기구들내에 그러한 내부 감시 기능을 확장하는 일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도록 OIOS 에게 권한을 부여함.

**165.** 모든 유엔 직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행동 기준을 요구하며, - 각 나라의 사무소 혹은 본부에 있는 모든 - 유엔직원에게 의한 성적 착취와 남용에 대하여 한 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무총장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당한 노력을 지지함.

우리는 사무총장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희생자(victims)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식에 대한 제안서를 총회에 제출해 줄 것을 권고함.

166. 유엔의 정책과 결정에 있어서 성 차별을 철폐하는 것에 대하여, 사무총장과 모든 의사 결정 기구들이 현재보다 한 단계 더 진보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격려함.

167. 우리는 유엔의 모든 활동에 연관된 직원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규탄함. 우리는 각국이 '유엔과 관련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협약 (the Convention on the Safety of United Nations and Associated Personnel)'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며, 제 60회 유엔총회동안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종결할 필요 있음.

#### 조직전반에 걸친 일관성

#### (System-wide coherence)

168. 지구적 이슈(global issues)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유엔이 기여한 공헌들을 인정함. 유엔의 다양한 개발관련 기구, 기관, 기금, 프로그램들의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과 전문지식들을 높이 평가함. 다양한 유엔 회의에 의해 설정된 MDGs

와 다른 개발 목표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유엔의 상당한 공헌 또한 높이 평가함.

169. 우리는 아래의 방법들을 이행함으로써, 조직 전반에 걸친 일 관성을 더 강화하도록 지원함.

### 정 책

- 유엔 체계의 규범적인 업무와 그 기능적인 활동들 사이의 연계를 강화함.
- 다양한 개발기구와 인도주의 기구들이, 임무를 부여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조직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그 기구들의 운영위원회 (governing board)에 우리의 의견을 조화시킴.
-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과 성 역할과 같은 주요한 수평적 정책들이 전 유엔 체계에 걸쳐 그 결정 과정(decision-making)에 고려되어야 함.

#### 운용 활동들 (Operational activities)

- 적법한 권한, 자원과 책임, 그리고 공동 관리, 프로그래밍과 모니터링 기본원칙과 함께 - 특별 대표단, 각국 주재 코디네이터 혹은 인도주의 코디네이터이든지- 상임 유엔 주재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각 국 유엔 사무소들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고, 조정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 개혁들을 실행함.

- 사무총장이 유엔의 운용 활동(operational activities)의 관리와 조정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도록 요청함. 그래서, 그 운용활동들이 MDGs 및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의 성취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인도주의 원조

- 인류애, 중립, 공평과 독립성의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을 따라, 인도주의 행위자가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비하고 대처하며, 그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모든 차원에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각 국의 노력,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
- 유엔의 인도주의 대응, 그 중에서도 인도주의 기금의 적시성과 예측가능성을 개선시키고, 부분적으로 중앙 긴급 순환기금 (Central Emergency Revolving Fund)을 개선함으로써 그 대응의 효과를 강화시킬 것.
- 더 나아가, 유엔의 후원 하에, 인도주의 긴급 상황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기 능력(emergency standby capacities)의 활용을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고 개선시킬 것.

### 환경 활동

- 유엔 체계 내에서, 강화된 조정(coordination) 역할, 개선된 정책조언과 지침, 강화된 과학 지식, 평가와 협력, 더 나은 조약 가입(treaty compliance)과 더불어 - 운용적인 차원에서 환경 활동을 더 넓은 범위의 '지속가능한 개발' 틀(framework)에 통합시킬 뿐 아니라, 역량구축과 조약의 법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 더 효과적인 환경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됨.
- 우리는, 조약 기관들(treaty bodies)과 특별 기구들 뿐 아니라, 기존 조직들과 국제적으로 협의된 기관들 위에 세워진 더 통합된 구조를 포함하여, 위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구조를 연구하는데 동의함.

### 지역 기구들(regional organizations)

170. 우리는 헌장 제8장에 따라, 유엔과 지역 (regional) 및 지역 내소구역(sub-regional) 기구들 사이의 더 밀접한 관계형성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 각 사무국들 간 조약을 통하여 혹은 적절한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 업무에 지역 기구를 참여시킴을 통하여, 유엔과 지역 및 소구역 기구들 사이의 협의와 조정을 확대함.
  - 무력분쟁의 예방 및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지역 기구들을 유엔 대

기 장치(UN Standby Arrangements System)의 구조 내에 두는 것을 고려함.

-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함.

### 유엔과 의회 사이의 협력

171. 특히, 유엔 활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Millennium Declaration의 모든 면을 추진하고 유엔 개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의회간 연합(Inter-Parliamentary Union)을 통한 방식을 포함하여 유엔과 국내 및 지방 의회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것.

### 지방 당국, 민간 부문과

#### NGO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참여

172. 우리는 개발과 인권 프로그램의 이행과 촉진에 있어서, NGO를 포함한 민간부문과 시민사회의 긍정적인 기여를 환영하며, 이러한 핵심 분야에 있어서 정부, 유엔, 그리고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함.

173. MDGs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들의 성취를 위해 지방당국의 역할이 중요함.

174. 지구적 협정(Global Compact)에 의해 촉진된 것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을 장려함.

175. 또한 우리는, NGO와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대표자들과 함께 했던 비공식적인 총회 최초 쌍방향 발언기회(interactive hearings)와 같이 이러한 기구들과 회원국들 사이의 대화를 환영함.

### 유엔 현장

176. 신탁통치 위원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현장 제8장과 제12장의 '위원회 조항'을 삭제해야 함.

177. 총회 결의안 50/52를 고려하고 이와 관련된 총회의 토론 내용들을 상기하고, 유엔 설립의 근본적 이유를 염두하며 우리 공동의 미래(common future)를 바라볼 때, 우리는 유엔 현장의 제 53조, 제 77조, 제 107조의 "적대국가(enemy states)"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결의함.

178. 우리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군사 조직 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의 구성, 임무,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요청함.